

#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4,580,166	12,137,405
일반회계	384,487,824	11,534,635
특별회계	20,092,342	602,770
공기업특별회계	10,369,255	311,07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369,255	311,078
기타특별회계	9,723,087	291,69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98,068	62,942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791,553	53,747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370	41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328,970	69,869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440,000	13,200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319,800	69,59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43,326	22,300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87,91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